

『더샵 신길센트럴시티(조합원 취소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 더샵 신길센트럴시티(조합원취소분)는 사이버 건본주택(<https://더샵신길센트럴시티.kr>)으로만 운영하며,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 세부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이용 취약 계층(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본인이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하며, 건본주택에서 청약 신청시(10:00 ~ 14:00) 자격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前)으로 분양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내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8.07.(금) 예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13-8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2~35층 16개동, 총 2,054세대 중 조합원 취소분 6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미정(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입주 예정일 : 2029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예정일은 추후 통보)
- 특별공급대상 세대수

※괄호()안의 수는 예비대상자수: 투기과열지구 500% 적용

약식표기		51A	51A1	51B	51C	51D	59A	59A1	59B	59C	74A	74B	74C	84A	합계
장애인	서울특별시	-	-	-	-	-	-	-	1(5)	-	-	-	-	-	1(5)
	경기도	-	-	-	-	-	-	-	1(5)	-	-	-	-	-	1(5)
	인천광역시	-	-	-	-	-	-	-	1(5)	-	-	-	-	-	1(5)
	소계	-	-	-	-	-	-	-	3(15)	-	-	-	-	-	3(15)
국가유공자		-	-	-	-	-	-	-	1(5)	-	-	-	-	-	1(5)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	-	-	1(5)	-	-	-	-	-	1(5)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	-	-	1(5)	-	-	-	-	-	1(5)
중소기업 근로자		-	-	-	-	-	-	-	1(5)	-	-	-	-	-	1(5)
합계		0	0	0	0	0	0	0	7(35)	0	0	0	0	0	7(35)

※주택형 (청약신청 기준)	051.998 1A	051.99 31B	051.99 27C	051.990 9D	051.995 3E	059.997 3A	059.994 5B	059.990 3C	059.99 87D	074.993 9A	074.994 4B	074.992 0C	084.999 3A
약식표기	51A	51B	51C	51D	51A1	59A	59B	59C	59A1	74A	74B	74C	84A

-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에는 주택타입이 약식표기 되어있으나 특별공급 청약신청시에는 반드시 위의 공급대상의 ※「주택형(청약신청기준)」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 ②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예비대상자인 경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기관추천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④ ‘추천대상자’의 당첨 여부는 청약 신청 후 자격심사 등을 거쳐 당첨이 확정되며 타 특별공급과의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 “국가유공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분을 말함.

II

공급일정 안내 「예정」

- ※ 공급일정은 인·허가 및 사업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서류제출 없음)으로 하고 있으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구비서류 미비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필요 서류는 홈페이지 특별공급 서류안내 참조)

구 분	공급 일정 (예정)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년 08월 07일 (금)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사이버견본주택 개관	2026년 08월 07일 (금)	* 홈페이지 (https://더샵신갈센트럴시티.kr)
※당첨 대상자 회신	2026년 08월 13일 (목) 14:00까지	* 당사 담당자에게 추천대상자 명단 송부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6년 08월 18일 (화) 09시~17시30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및 KB모바일인증서 로그인 후 청약
당첨자 발표일	2026년 08월 27일 (목)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당첨자 서류접수기간	2026년 08월 28일 (금) ~ 2026년 09월 02일 (수)	* 견본주택 방문 예약으로 진행
※ 계약 체결일	2026년 09월 07일 (월) ~ 2026년 09월 09일 (수)	* 견본주택 방문 예약으로 진행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기본요건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
- 추천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단, 특별공급 전체물량의 500% 범위에서 추첨으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입주자 저축통장 구비 여부

구분	내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변경시, 변경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추천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함)
선정 방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기한 내에 사업주체로 선정된 명단을 보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추천한 순번에 따라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순위, 거주지, 성명, 뒷자리 7자리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추천타입 등 정확히 기재)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며, 동일 세대내 중복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 또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등에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 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 주체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당첨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 할 경우 소명 등 일반공급 처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재 고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분양가 포함)은 2026년 8월 7일(금) 예정되어 있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 사항	• 전매제한 :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년(주택법 제64조) • 재당첨제한 :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무주택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하여 소유하고 있지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 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함 ※ 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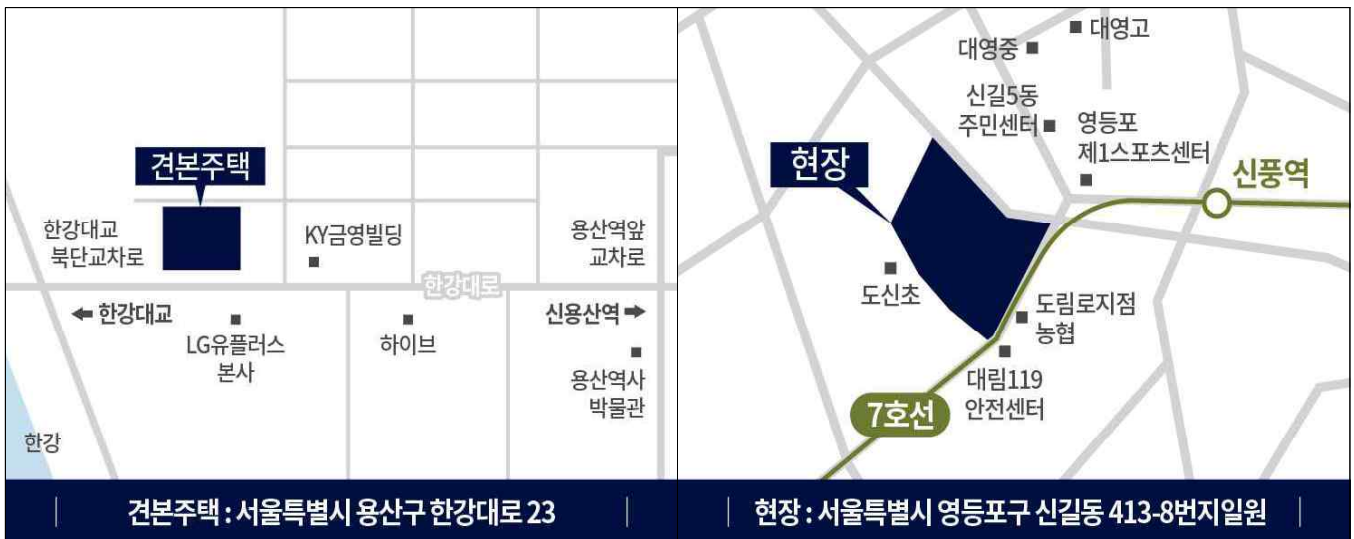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 (단,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등에서 당첨)에 의거 해당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4.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IV

유의사항 안내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항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형, 추천기관명, 연락처 등)
- 기관추천특별공급 추천대상자는 청약신청과 자격심사 등을 거친 이후 최종 당첨이 확정되며 동일 세대 내 중복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등에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 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 주체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당첨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 할 경우 소명 등 일반공급 처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6. 08. 07.(금)**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더샵 신길센트럴시티」 사이버견본주택 및 안내 서류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6.06.1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더샵신길센트럴시티.kr> (검색어 "더샵신길센트럴시티")

■ 건본주택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9, 舊 베르가모웨딩홀)

■ 분양문의 : 02-2675-6000

※ 본 안내문의 내용 및 이미지는 편집 등의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 공고 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에 우선합니다.